

# 電力技術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통과 안내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전문을 안내합니다.  
동개정법률은 공포(판보게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의안 번호	3502
----------	------

제안연월일 : 2005. 11. 30

제안자 : 산업자원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가. 2005년 7월 18일 오제세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0월 26일 정부에서 제출한 “電力技術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위원회(2005. 11. 17)에서 각각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나. 법안심사소위원회(2005. 11. 18)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그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위원회(2005. 11. 22)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2. 대안의 제안이유

- 가.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실태조사시 사전통지제도의 도입 및 실태조사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나.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그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업자도 시·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하고, 공사감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 및 공사감리 완료 보고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는 승인권자인 시·도지사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공사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12조제8항 신설).
- 나.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에 관한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의무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2항 및 제30조제2항제1호 신설).
- 다. 감리업자 등은 공사감리용역의 완료시에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무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3항 및 제30조제2항제2호 신설).
- 라. 실태조사 요건을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기준 적합여부,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여부 및 감리원 배치현황 적합여부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23조제1항).  
 마. 실태조사시 사전통지제도를 마련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p><u>電力技術管理法</u></p>	<p><u>전력기술관리법</u></p>
<p>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p>1.~3. (생략)</p> <p>4. “工事監理”라 함은 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に 대하여 發注者의 委託을 받은 監理業體가 設計圖書 기타  관계書類의 내용대로 施工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品質管理·工事管理 및 安全管理 등에 대한 技術指導를 하며, 關係法令에 따라 發注者의 權限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p> <p>5. “監理員”이라 함은 監理業體에  종사하면서 電力施設物의 工事監理業務를 행하는 者를 말한다.</p>	<p>第2條(定義) ----- ----- 1.~3. (현행과 같음)</p> <p>4. ----- -----<u>공사감리업체</u>----- ----- ----- 5. -----<u>공사감리업체</u>----- ----- -----</p>
<p>第6條(電力技術의 研究·開發등의 권고) 産業資源部長官은 새로운 電力技術의 研究·開發 및 導入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附設研究所를 設置·운영하거나 共同研究 및 情報交換·技術開發을 위한 投資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u>韓國電力技術人協會</u></p> <p>3.~4. (생략)</p>	<p>第6條(電力技術의 研究·開發등의 권고) ----- ----- ----- ----- ----- 1. (현행과 같음)</p> <p>2.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u>전력기술인단체</u></p> <p>3.~4. (현행과 같음)</p>
<p>第12條(工事監理 등) ①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發注者(이하 “發注者”라 한다)는 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的 品質確保 및 향상을 위하여 第1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監理業者”라 한다)에게 監理를 發注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u>〈신설〉</u></p>	<p>第12條(工事監理 등) ①----- ----- ----- -----<u>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u>-----<u>공사감리</u>----- -----<u>〈단서 삭제〉</u>-----</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직원중 감리원 수첩을</p>

현행	개정안
<p>② (생략)</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對象인 설치·보수공사의 범위, 감리원 배치기준 및 監理員의 資格·資格證發給·業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를 행하는 監理員은 그 業務를 성실히 수행하고 電力施設物의 設置·補修工事의 品質向上에 노력하여야 하며 監理員으로서의 品位를 損傷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⑤제2항의 規定에 따라 감리원의 자격확인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행하게 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제4항의 規定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p> <p>2.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 시설물 공사</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따른 공사감리의 대상인 설치·보수공사의 범위, 감리원 배치기준, 감리원의 자격 및 그 확인, 감리원의 자격증발급 및 업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⑤제3항의 規定에 따라 공사감리----- ----- -----.</p> <p>⑥제3항의----- ----- -----.</p> <p>⑦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따른 공사감리----- -----</p> <p>⑧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規定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주택건설공사(사업주체가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의 規定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p> <p>⑨제8항의 規定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등”이라 한다)가 공사감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착공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p> <p>1. 감리업자</p> <p>2. 제12조제2항제1호의 規定에 따라 소속 감리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p> <p>②감리업자 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때(변경배치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배치현황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p>

현행	개정안
<p>第14條(設計業·監理業의 登錄 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그 營業의 種類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1. (생략)</p> <p>2. 電力施設物의 工事監理業(이하 “監理業”이라 한다)</p> <p>② (생략)</p> <p>③제1항의 規定에 따라  등록을 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⑤ (생략)</p> <p>제14조의2(설계·감리업자 선정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용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規定에 의한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② (생략)</p> <p>③설계·감리업자가 설계·감리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p>	<p>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③감리업자 등은 그가 시행한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規定에 따른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 또는 제3항의 規定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감리원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완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⑤제2항의 規定에 따른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제3항의 規定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 내용 및 제출방법, 제4항의 規定에 따른 감리원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완료필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第14條(設計業·監理業의 登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시·도지사----- -----, 1. (현행과 같음) 2. -----감리업 ② (현행과 같음) ③----- -----감리업----- -----, ④·⑤ (현행과 같음)</p> <p>제14조의2(설계·감리업자 선정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공사감리용역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1.~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공사감리용역계약----- -----</p>

현행	개정안
<p>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b>第23條(監督)</b>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u>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設計業者 및 監理業者에 대하여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所·事務所 또는 事業場에 出入하여 關係書類·施設등을 檢査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u></p> <p>&lt;신설&gt;</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 및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u>내보여야 한다.</u></p> <p><b>第26條(手數料)</b>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は 산업자원부령 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3.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員의 資格確認을 받고자 하는 자</p> <p>&lt;신설&gt;</p> <p>4.·5. (생략)</p> <p><b>第27條(權限의 위임·委託)</b> 이 법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p>	<p>----- ----- ----- ----- ----- -----.</p> <p>④ (현행과 같음)</p> <p><b>第23條(보고 및 검사 등)</b> ①-----등록 기준에의 적합여부,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유무 및 감리원의 배치현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p> <p>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 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p> <p>내보여야 하며, 검사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 검사시간 및 검사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b>第26條(手數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p> <p>-----.</p> <p>1.~2. (현행과 같음)</p> <p>3. 제12조제3항-----</p> <p>-----.</p> <p>3의2.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원료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p> <p>4.·5. (현행과 같음)</p> <p><b>제27조(권한의 위임 등)</b>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감리원</p>

현행	개정안
<p>第28條(罰則)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3. (생략) 4.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設計 또는 監理를 業으로 한 者 5.·6. (생략)</p> <p>第29條(罰則)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생략) 2.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設計 또는 監理를 실시함에 있어 技術基準을 준수하지 아니한 者 3.~ 4의2. (생략) 4의3. 제12조제5항의 規定에 위반한 監理원 및 그 상대방 4의4.~ 4의5. (생략) 5. 제23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출입·검사를 正當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p> <p>第30條(過怠料) ①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3. (생략) &lt;신설&gt;</p>	<p>의 교육훈련 및 관리 2. 제11조제2항의 規定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3. 제12조제2항의 規定에 따른 監理원의 資格 확인 4. 제12조의2제4항의 規定에 따른 監理원배치현황신고서 및 공사監理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監理원배치확인서 및 공사監理완료필증의 발급 5. 제14조제1항의 規定에 따른 설계업 또는 監理업의  변경등록신고(전력기술인, 監理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에 한한다) ③시·도지사 및 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단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따라 행한 처분 등이  违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 등을 취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p> <p>第28條(罰則) 다음各號의 어느 하나 ----- 1.~ 3. (현행과 같음) 4.----- -----공사監理----- 5.·6. (현행과 같음)</p> <p>第29條(罰則) 다음各號의 어느 하나 ----- 1. (현행과 같음) 2. -----공사監理----- ----- 3.~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제12조제6항----- ----- 4의4. ~ 4의5. (현행과 같음) &lt;삭제&gt;</p> <p>第30條(過怠料) ①다음各號의 어느 하나 ----- 1.~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2조의2제1항의 規定에 따라 監理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監理업자등. 다만, 국가 또는 지</p>

현행	개정안
<p>4.~ 5. (생략) &lt;신설&gt;</p> <p>&lt;신설&gt;</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賦課·徵收한다.</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管轄 法院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p> <p>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 중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p> <p>第32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業務에 종사하는 協會의 任·職員과 第12條 및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業務를 행하는 監理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p> <p>&lt;신설&gt;</p>	<p>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p> <p>4.~ 5. (현행과 같음)</p> <p>6.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출입·검사 및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p> <p>1.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또는 변경배치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p> <p>2.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p> <p>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p> <p>③제1항 및 제2항----- -----.</p> <p>④제3항----- -----.</p> <p>⑤제3항----- -----제4항----- -----「비송사건절차법」----- -----</p> <p>⑥제4항----- -----.</p> <p>第32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 -----「형법」----- -----.</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감리업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③(공사감리완료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p>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안내

## 노동부령 제239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05. 11. 11 공포됨에 따라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신산업 및 고부가가치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반도체 설계산업기사·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등 8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고,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추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명칭 및 시험과목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기관련 자격은 변경사항 없음.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시행 안내

## 대통령령 제19128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05. 11. 11 공포됨에 따라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정이유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할 학교시설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

을 확보하고,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벽이 없는 축사의 경우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농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학교시설의 범위(별표 2 제11호)

-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학교시설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 서로 달라 법 집행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 (2)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학교시설의 범위를 교사·체육관 및 급식시설로 하도록 함.
- (3) 학교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축사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완화(별표 4)

- (1) 비상경보설비는 화재 시 사람이 작동버튼을 눌러야 작동되는 설비 임에도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축사에도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효용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 (2)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벽이 없는 축사를 제외하도록 함.

##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 법률 제7697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2005. 11. 8 공포됨에 따라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의 등록말소 사유에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를 추가함으로써 선의의 발주자를 보호하고,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로서 3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업 미등록자에 의한 부실시공 문제를 해소하며, 건설업 등록관청에서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일시 등을 피조사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실태조사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시행 안내

법령정보  
ACT INFORMATION

###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이 2005. 11. 8 공포됨에 따라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정이유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당해 대지에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건축허가대상 조정, 건축물 출입구 안전기준의 근거마련, 주요공사 시공자의 건축물대장예의 기재, 안전관리에치금제도 도입 등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건축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건축설비의 종류에 초고속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도입(제7조 신설)

건축주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등의 확대(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신고로 하도록 하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과 상위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은 건축허가를 받도록 함.

### 다. 방치건축물의 안전관리에치금 제도 도입(제8조의3 신설)

허가권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라. 대지안의 공지확보 기준 마련(제50조 신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함.

### 마.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도입(제58조 신설)

친환경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인증제도의 실시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인증 신청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및 운영 개선(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8, 제76조의9 내지 제76조의18 신설)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조정하고 시·도에는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며, 조정위원회에는 건축관계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권한 뿐만 아니라 재정(裁定)권한을 부여함.

##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 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안내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 노동부공고 제2005-251호, 제2005-252호
- 입법예고기간 : 2005. 11. 17 ~ 12. 7
- 관련문의 : 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Tel.02502-6631)
- 전문참고 : 노동부([www.molab.go.kr](http://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예고)

## 1. 시행령 주요내용

- 가. 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함.
- 나. 『고용보험법』개정으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되고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로 변경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규정함
- 다. 영세사업장의 보험료신고·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징수특례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근로자가 없는 사업 등을 적용제외하고, 징수특례사업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전년도 말일 현재 피보험자격취득자로 하며,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한 경우의 납부기한을 재산정일이 속하는 분기의 특례보험료의 납부기한까지로 함

## 2. 시행규칙 주요내용

- 가. 사업주는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신고시 피보험자원천공제대장 사본 외에 개별근로자의 임금, 근무기간이 나타나는 근로자 개인별 내역을 제출하도록 함
- 나.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기한을 당해 보험연도 2월말에서 당해 보험연도 3월말로 연장함.
- 다. 중·소기업사업주가 납부하는 산재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분할납부가 가능한 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 그 산재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

라.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과 당해연도 총월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보험연도의 3월31일(보험연도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까지 신고·납부토록 하며,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분할납부가 가능한 고용보험료를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하는 경우 그 고용보험료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함

##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안내

법령정보  
ACT INFORMATION

의안 번호	3420
----------	------

제안연월일 : 2005. 11. 22  
제안자 : 재정경제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5. 7. 29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 8. 22 이성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6차 재정경제위원회(2005. 11. 1)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9차 재정경제위원회(2005. 11. 11)는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2년 이내의 범위'로

